

수송시설 확인신청서				처리기간
				7 일
신청인	① 성명(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	② 생년월일	
	③ 주 소	(전화:)		
④ 사 업 의 종 류		(운행형태:)		
⑤ 노 선 및 사 업 구 역				
⑥ 운 송 개 시 예 정 일				
⑦ 운 행 통 계 별 출 발 · 도 착 시 간				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송시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시·도지사 귀하				
※ 첨부서류 1.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.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. 시설등의 명칭·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1부				수수료 6,000원

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 쪽)

